학교법인 창성학원

2020학년도 제4회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2
재적임원	8	2
참석임원	7	0

1. 회의일시 : 2020년 8월 12일(수) 14:00~18:00

2. 회의장소 : 법인사무국 회의실

3. 회의소집 통보일 : 2019년 8월 3일(월)

4. 임원 출석현황

○참석 임원
- 이사(7인) : 곽영교, 박성옥, 신현동, 심재명, 안근식, 오연주, 임정섭

○불참 임원
- 이사(1인) : 김두헌
- 감사(2인) : 정상민, 황인상

5. 회의안건

가. 보고안건

▫제1호: 2020학년도 제3회 이사회 회의 결과보고

나. 의결안건

▫제1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소속변경 임용(안)
▫제2호: 2021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 계획(안)
▫제3호: 중등학교 교장 명예퇴직(안)
▫제4호: 중등학교 교장직무대리 임용(안)
▫제5호: 중등학교 교원 전보 임용(안)
▫제6호: 중등학교 교원 휴직 임용(안)
▫제7호: 2020학년도 대덕대학교 부속어린이집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8호: 2020학년도 대전광역시립 으능정이어린이집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9호: 2020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아이누리어린이집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0호: 2020학년도 정부세종2청사 아이세상어린이집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1호: 2020학년도 대덕대학교 부속유치원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교

▫ 제12호: 2020학년도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13호: 2020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14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안)
▫ 제15호: 2020학년도 대전중앙중학교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16호: 대덕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 불용처리 승인(안)
▫ 제17호: 대덕대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안)
▫ 제18호: 대덕대학교 교직원 조기희망퇴직 수당 지급(안)
▫ 제19호: 대학 적립금 용도 변경 및 사용 계획 변경(안)
▫ 제20호: 2020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21호: 대덕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영 혁신 계획(안)
▫ 제22호: 대덕대학교 역사관 설치운영 계획(안)
▫ 제23호: 2020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제2차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24호: 2020학년도 법인 수익회계 제1차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25호: 법인 정관 변경(안)
▫ 제26호: 법인 교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 제27호: 법인 교직원복무 규정 개정(안)
▫ 제28호: 법인 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개정(안)
▫ 제29호: 법인 교원상급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규정 개정(안)
▫ 제30호: 법인 산하학교 교직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안)

다. 기타안건

▫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 건

라. 보고사항

▫ 제1호: 중등학교 교원 정년퇴직 보고
▫ 제2호: 대덕대학교 강사 면직 보고
▫ 제3호: 대덕대학교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예산운용 및 급여체계 개편(안) 보고
▫ 제4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소속변경 처리사항 보고
▫ 제5호: 대덕대학교 산학협력단 링크플러스(LINC+)사업 감사 계획(안) 보고
▫ 제6호: 2020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예산전용 보고

6. 회의 진행 내용

가. 성원보고

2020학년도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정관 제28조 제1항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간사가 보고함.

나. 개회선언

의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 2020학년도 제4회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함.

다. 보고안건

▫ **제1호: 2020학년도 제3회 이사회 회의결과 보고**

간사가 2020학년도 제3회 이사회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의장이 이사 간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전차 회의록을 접수함.

이사	심재명	이사	안은식	이사	곽영고

라. 의결안건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소속변경 임용(안)입니다.

의장이 제1호 안건을 발의한 후 간사가 제안사유를 설명하고 대덕대학교 송영필 교육부총장 겸 교무처장이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교육부총장 겸 교무처장 송영필) 2016년 2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소속변경(전보)이 임용으로 정의되었고 법인 행정감사에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시행한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소속변경에 사립학교법 위반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대한 시정 및 후속조치로 컴퓨터인터넷학과 권영희 교수 등 12명에 대한 소속변경 임용(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에 앞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 제4호 안건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소속변경 처리사항 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법인 행정감사에서 2016학년도부터 컴퓨터인터넷학과 권영희 교수 등 16명에 대한 소속변경 과정에 사립학교법 위반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감사 결과조치 사항을 법인으로부터 통보받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16명 전원에 대해 원 소속으로 복귀를 시켰으며, 상기 컴퓨터인터넷학과 권영희 교수 등 12명에 대하여 소속변경 신청서류(소속변경 신청원, 자구노력 계획서, 전공일치(유사)성 및 학과 운영계획, 소속 변경 관련 학과 의견)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 소속변경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태봉 교수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교양과로 원 소속 복귀를 하였고 정보통신과 전용억 교수 등 3명은 신청서류 제출이 늦어져 차후 이사회에 소속변경 임용(안)을 상정하여 소속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호 안건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호의 안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소속변경 임용(안)

연번	현소속	직급	성명	소속 변경 학과	임용발령일
1	컴퓨터인터넷학과	부교수	권영희	정밀기계공학과	2020.08.12.
2	컴퓨터인터넷학과	부교수	김소영	시각디자인과	2020.08.12.
3	컴퓨터인터넷학과	부교수	유채곤	방공유도무기과	2020.08.12.
4	교양과	부교수	한영철	공병부사관과	2020.08.12.
5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이승무	총포광학과	2020.08.12.
6	해양기술부사관과	조교수	김남윤	항공부사관과	2020.08.12.
7	보건의료행정과	부교수	백승은	총포광학과	2020.08.12.
8	방공유도무기과	부교수	정병우	항공부사관과	2020.08.12.
9	컴퓨터정보학과	부교수	오선영	유아교육과	2020.08.12.
10	컴퓨터전자과	교수	임재윤	전기전자과	2020.08.12.
11	컴퓨터전자과	교수	정기철	전기전자과	2020.08.12.
12	컴퓨터전자과	교수	변상준	전기전자과	2020.08.12.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교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2호의 안은 2021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 계획(안)입니다.
의장이 제2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이의 없음을 확인함.

제2호 안건은 박성옥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2호의 안은 박성옥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2021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 계획(안)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1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과목	국어	역사	상업	정보·컴퓨터	계
선발예정인원	1	1	2	2	6

2. 시험 일정(예정)

가. 1차 시험[2020.11.21.(토)] : 필기시험(교육학 및 전공)-교육청 시험 위탁(합격자 5배수 추천)
나. 2차 시험[2021.01. 중순] : 자체시험(교수학습지도안작성 및 수업실연, 전공시험, 실기시험)
다. 3차 시험[2021.01. 중순] : 면접심사

3. 합격자 결정

구 분	배점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교육청 위탁시험)	교육학(20점) 전공A(45점) 전공B(35점) (100점만점)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제1차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제1차 시험 점수 = 1차 시험 성적 + 가산점 + 가점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제2차 시험 (법인 자체시험)	지도안작성(50,30점) 수업실연(50,30점) 실기시험(40점) (100점만점)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1차 시험(40%)와 2차시험(60%) 점수를 합산하여 시험 점수가 높을 사람부터 차례로 제3차 시험 대상자로 결정한다.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시험과목 적용) - 국어, 역사 : 지도안작성(50점), 수업실연(50점) - 상업, 정보·컴퓨터 : 지도안작성(30점), 수업실연(30점), 실기시험(40점)
제3차 시험 (법인 자체시험)	면접심사 (100점만점)	○ 제1차 및 제2차 시험 성적은 적용하지 않음. ○ 제3차 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심사 총점(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면접심사 총점(만점)의 70퍼센트 미만 득점자는 합격에서 제외한다.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 합격자		○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한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1차, 제2차 시험의 합산성적(가점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 4순위 :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 5순위 : 교육경력이 많은 사람 ○ 제3차전형의 과목성적이 평가자 전원으로부터 70점미만인 사람은 제3차 전형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따라서 과목별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음.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고

구 분	배점	합격자의 결정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전형별(단계별), 과목별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3호의 안은 중등학교 교장 명예퇴직(안)입니다.
의장이 제3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3호 안건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3호의 안에 대하여는 신현동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중등학교 교장 명예퇴직(안)

소속	직급	성명	퇴직사유	퇴직예정일	비고
대전중앙중학교	교장	정천복	명예퇴직	2020.08.31.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명예퇴직을 최종 승인 시 적용하고, 반려될 경우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함.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4호의 중등학교 교장직무대리 임용(안)입니다.
의장이 제4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4호 안건은 임정섭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4호의 안은 임정섭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중등학교 교장직무대리 임용(안)

소속	직명	성명	임용사유	임용일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교감	조중택	전임 교장의 사망퇴직	2020.08.12.
대전중앙중학교	교감	정선임	현재 교장의 명예퇴직 예정	2020.09.01.

※ 교장직무대리 임용기간 : 조중택(2020.08.12.부터 후임교장 임용 시까지)
정선임(2020.09.01.부터 후임교장 임용 시까지)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5호의 안은 중등학교 교원 전보 임용(안)입니다.
의장이 제5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5호 안건은 박성옥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5호의 안은 박성옥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이사	심재명	이사	안은식	이사	곽영고

★ 승인된 중등학교 교원 전보 임용(안)

소속	직명	과목	성명	전보(이동)학교	임용일자
대전중앙고등학교	교사	체육	강경래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020.09.01.
대전중앙고등학교	교사	체육	이원규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020.09.01.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체육	김영일	대전중앙고등학교	2020.09.01.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6호의 안은 중등학교 교원 휴직 임용(안)입니다.

의장이 제6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6호 안건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임정섭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6호의 안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임정섭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중등학교 교원 휴직 임용(안)

소속	직명	교과	성명	휴직기간	휴직사유	임용일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체육	김은영	2020.09.01.~2021.08.31.	간병휴직	2020.09.01.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7호의 2020년도 대덕대학교 부속어린이집회계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7호 안건을 발의 후 영유아보육연수원 장혜자 원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7호 안건은 임정섭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7호의 안은 임정섭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2020년도 대덕대학교 부속어린이집회계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591,478천원	603,864천원	-12,385천원	-2.1%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8호의 안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립 으능정이어린이집회계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8호 안건을 발의 후 영유아보육연수원 장혜자 원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고

제8호 안건은 곽영교 이사의 동의, 안근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8호의 안에 대하여는 곽영교 이사의 동의, 안근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2020년도 대전광역시립 으능정이어린이집회계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634,565천원	622,106천원	12,459천원	2.0%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9호의 안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아이누리어린이집회계 제1차 세입 ·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9호 안건을 발의 후 영유아보육연수원 장혜자 원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9호 안건은 박성옥 이사의 동의, 임정섭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9호의 안에 대하여는 박성옥 이사의 동의, 임정섭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아이누리어린이집회계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781,738천원	874,469천원	-92,731천원	-11.9%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0호의 안은 2020년도 정부세종2청사 아이세상어린이집회계 제1차 세입 ·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10호 안건을 발의 후 영유아보육연수원 장혜자 원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0호 안건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0호의 안에 대하여는 안근식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2020년도 정부세종2청사 아이세상어린이집회계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2,068,925천원	2,178,225천원	-109,299천원	-5.3%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1호의 안은 2020학년도 대덕대학교 부속유치원회계 제1차 세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교

입 ·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11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 현기철 서무과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1호 안건은 곽영교 이사의 동의, 신현동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1호의 안에 대하여는 곽영교 이사의 동의, 신현동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2020년도 대덕대학교 부속유치원회계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1,292,432천원	1,259,589천원	32,843천원	2.5%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2호의 안은 2020학년도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제1차 세입 ·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12호 안건을 발의 후 대전중앙고등학교 임효병 행정실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2호 안건은 임정섭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2호의 안에 대하여는 임정섭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2020년도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9,592,608천원	7,104,049천원	2,488,559천원	25.9%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3호의 안은 2020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제1차 세입 ·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13호 안건을 발의 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송성환 행정실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3호 안건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신현동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3호의 안에 대하여는 안근식 이사의 동의, 신현동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교

★ 승인된 2020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8,167,176천원	7,201,997천원	965,179천원	11.8%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4호의 안은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안)입니다.

의장이 제14호 안건을 발의 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송성환 행정실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4호 안건은 오연주 이사의 동의, 안근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4호의 안에 대하여는 오연주 이사의 동의, 안근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안)

소재지	지번	증축구조 및 건물내역	증가면적	평가액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0-1 외 3필지	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 증축면적 및 용도 1층: 180㎡(조리실, 식당)	180㎡	53,390,159원
		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 증축면적 및 용도 1층: 120.45㎡(주현관,보조행정실) 1층: 52.8㎡(연결복도) 2층: 538.95㎡(세미나실,실습실) 2층: 32.11㎡(연결복도) 3층: 538.95㎡(실습실) 3층: 32.11㎡(연결복도) 4층: 538.95㎡(실습실) 4층: 32.11㎡(연결복도) 5층: 538.95㎡(실습실) 5층: 32.11㎡(연결복도)	2,457.49㎡	3,278,667,545원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5호의 안은 2020학년도 대전중앙중학교회계 제1차 세입 ·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15호 안건을 발의 후 대전중앙중학교 박상우 행정실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5호 안건은 박성옥 이사의 동의, 임정섭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5호의 안에 대하여는 박성옥 이사의 동의, 임정섭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2020년도 대전중앙중학교회계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3,021,773천원	2,755,462천원	266,311천원	8.8%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고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6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 불용처리 승인(안)입니다.
의장이 제16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 송영필 교육부총장 겸 교무처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이사(안근식) 매년 재물조사를 하는지를 질의함.

(교육부총장 겸 교무처장 송영필) 실험·실습기자재를 관리하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전체적인 재물조사한지는 오래되었다고 답함.

이사(안근식) 대학의 기자재 및 비품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대학은 조속히 기자재 및 비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6호 안건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6호의 안에 대하여는 신현동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대덕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 불용처리 승인(안)

구분	세부사항	구입가격(원)	비고
폐기	노후 컴퓨터 외 47종 479점	267,436,400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7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안)입니다.
의장이 제17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 최동열 기획처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7호 안건은 오연주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7호의 안에 대하여는 오연주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대덕대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안)

1. 명예퇴직수당지급
 가. 지급대상
 1) 교원 : 우리 학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 정년퇴직 전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직원
 2) 직원 :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으로 정년퇴직 전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직원
 나. 지급방법 : 명예퇴직수당 산정표에 의한 지급액 + 명예퇴직수당 부가금
2. 명예퇴직 수당 산정표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교

정년잔여 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자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 수
5년 이상 10년 이내인자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60+(정년 잔여월수-60)/2)
10년 초과인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3. 명예퇴직 수당 부가금 기준
가. 정년 잔여기간 5년 기준으로 140,000천원
나. 정년 잔여기간 5년 이내인 자는 5년 기준액의 0.0167% 상당액 정액을 매월 감액
다.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인 자는 5년 기준의 부가금 반영
※명예퇴직 수당 부가금은 이번에 한하여 지급함.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8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교직원 조기희망퇴직 수당 지급(안)입니다.
의장이 제18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 최동열 기획처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8호 안건은 곽영교 이사의 동의, 안근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8호의 안에 대하여는 곽영교 이사의 동의, 안근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대덕대학교 교직원 조기희망퇴직 수당 지급(안)
1. 조기희망퇴직수당지급 내용
가. 지급대상
1) 교원 : 우리 학원에서 근속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교원
2) 직원 :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
나. 지급방법 : 조기희망퇴직수당 산정표에 의한 지급액 + 조기희망퇴직수당 부가금
2. 조기희망퇴직 수당 산정표(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준용)

구 분	산 정 기 준
호봉제 교직원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최대 6개월
연봉제 교직원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최대 6개월

3. 조기희망퇴직 수당 부가금 기준
가. 정년 잔여기간 5년 기준으로 140,000천원
나. 정년 잔여기간 5년 이내인 자는 5년 기준액의 0.0167% 상당액 정액을 매월 감액
다.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인 자는 5년 기준액 반영
※조기희망퇴직 수당 부가금은 이번에 한하여 지급함.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9호의 대학 적립금 용도 변경 및 사용 승인(안)입니다.
의장이 제19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 최동열 기획처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이번 안건은 제20호, 제21호 안건이 연동되어 있기에 3개의 안건을 전부 설명하고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요청함.
(참석이사 전원 이사장의 제안에 동의함.)

(이사 안근식)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 제3호 대덕대학교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예산운용 및 급여체계 개편(안) 보고와 같이 적립금, 예산(안)의 내용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교

(최동열 기획처장이 의결안건 제19호, 제20호, 제21호와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 제3호를 연결하여 설명함.)

(사무국장 성대용) 기획처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2021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이 평가지표에 미충족하는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만일에 하나 우리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다면 대학이 어려워지는데, 이에 대한 개발 시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 신현동) 이번 안건은 조건을 달아서 승인했으면 합니다.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의 여부 등을 고려하고 개발에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법인과 협의하여 개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등 무조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이번 안건을 조건부 의결함에 있어서 대학의 자구노력(인건비 조정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합의, 학과 구조 조정을 위한 폐과 규정 정비 등) 및 2021년 정부재정지운제한대학 지정방안과 연계하여 향후 재정지원제한대학(1유형, 2유형) 지정 여부에 따라 대덕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영 혁신 계획 중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이 조건들의 진행과정 및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를 바랍니다. {다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예산집행 포함)은 유보되어야 함.}

제19호 안건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9호의 안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조건부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대학 적립금 용도 변경 및 사용 승인(안) (단위:원)

적립금의 종류	적립금 용도 변경			적립금 사용(인출)			
	현재 적립금 (a)	용도변경액 (b)	변경후 적립금 (c)=(a)+(b)	2020학년도 사용액 (d) 1차 추경 (승인완료)	2020학년도 사용액 (d) 2차 추경	2020학년도 사용액 (d) 합계	적립금 잔액 (e)=(c)-(d)
(A) 임의건축기금	28,456,814,997	-8,832,882,000	19,624,932,997	539,400,000	140,768,000	680,168,000	19,484,164,997
(B) 임의장학기금	12,823,158,647	0	12,823,158,647	0	0	0	12,823,158,647
(C) 임의퇴직기금	772,386,398	+3,360,000,000	4,132,386,398	0	3,360,000,000	3,360,000,000	772,386,398
(D) 임의특정목적기금	122,035,965	+5,471,882,000	5,593,917,965	3,809,784,000	5,471,882,000	9,281,666,000	122,035,965
D-1. 대학특성화및브랜드강화기금	0	0	0	110,000,000	0	110,000,000	0
D-2. 교육환경개선기금	0	4,154,893,000	4,154,893,000	142,000,000	4,154,893,000	4,296,893,000	0
D-3. 학생복지및취창업지원기금	0	0	0	0	0	0	0
D-4. 교직원보수및복지지원기금	0	1,312,985,000		3,557,784,000	1,312,985,000	4,870,769,000	0
D-5. 교육행정지원기금	122,035,965	4,004,000	126,039,965	0	4,004,000	4,00,4000	122,035,965
합계(A+B+C+D)	42,174,396,007	0	42,174,396,007	4,349,184,000	8,972,650,000	13,321,834,000	33,201,746,007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20호의 2020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20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 최동열 기획처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고

의장(이사장 심재명) 이번 안건은 제19호 안건 대학 적립금 용도 변경 및 사용과 제21호 안건 대덕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영 혁신 계획(안) 중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있기에 제19호의 안건이 조건부로 의결되었기에 연동되어 이번 안건도 같은 조건하에서 승인해야 함.

제20호 안건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20호의 안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19조 안건에 적용한 동일한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2020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2회	62,459,116천원	44,716,984천원	17,742,132천원	28.4%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21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영 혁신 계획(안)입니다.
의장이 제21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 최동열 기획처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이번 안건은 제19호, 제20호 안건이 조건부로 의결되었기에 이번 안건도 조건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21호 안건은 곽영교 이사의 동의, 신현동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21호의 안에 대하여는 곽영교 이사의 동의, 신현동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19조 안건에 적용한 동일한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22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역사관 설치운영 계획(안)입니다.
의장이 제22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 최동열 기획처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22호 안건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22호의 안에 대하여는 신현동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대덕대학교 역사관 설치운영 계획(안)
1. 역사관 운영 계획: 부속기관에 '역사관' 부서 신설
 ① 역사관 운영 인력 구성 : 관장 및 직원(학예사 등) 배치
 ② 역사관 주 설치운영 장소 : 정곡관 10층에 설치 예정
2. 주요 업무
 ① 대학의 개교이후 40주년 주요 교사자료 수집
 ② 대학을 빛낸 인물 발굴 및 홍보자료 수집
 ③ 역사관 관리 운영 및 홍보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23호의 안은 2020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제2차 수입 · 지출 추가경

이사	신현동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교

정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23호 안건을 발의 후 법인사무국 현기철 업무담당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23호 안건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23호의 안에 대하여는 안근식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2020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제2차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2회	529,411천원	429,411천원	100,000천원	18.9%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24호의 안은 2020학년도 법인 수익회계 제1차 수입 · 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24호 안건을 발의 후 법인사무국 현기철 업무담당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24호 안건은 오연주 이사의 동의, 임정섭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24호의 안에 대하여는 오연주 이사의 동의, 임정섭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2020학년도 법인 수익회계 제1차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647,243천원	509,419천원	137,824천원	21.3%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25호의 정관 변경(안)입니다.
의장이 제25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25호 안건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25호의 안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법인 정관 변경(안)

(구)현행	(신)개정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고

(구)현행	(신)개정
제39조의2 (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정관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관 제47조 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 6년 다. 조교수 : 4년 라. <삭제 2012.12.01.> 2. 급 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의거 계약 임용되는 교원의 계약조건은 정관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한다.	제39조의2 (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정관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관 제47조 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 6년 다. 조교수 : 4년 라. 강사 : 1년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②생략
제39조의 5(특별채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 예정 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근무실적 또는 기타 자질이 우수하여 학교에 꼭 필요한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타 우수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39조의 5(특별채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심사 절차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5.생략 ②생략
제39조의 6(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대학교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정년보장교원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고,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삭제 2016.06.14.>	제39조의 6(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정년보장 임용 교원의 정수 범위는 교원 정원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9조의 7(강사 등) 총장은 정관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4의 교원 외에 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등의 비전임 교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39조의 7(비전임 교원) 정관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4의 교원 외에 겸임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등의 비전임 교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44조(직위의 해제)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고

(구)현행	(신)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 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 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 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 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 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44조의2(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학교 내에서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의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학교, 학급, 학과의 개폐(계열 및 전공분야 개폐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폐직이 되거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생략 ②제1항에 따른 학과의 개폐(학과 구조조정)는 이사회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③생략 ④생략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생략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고

(구)현행	(신)개정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본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③생략
제75조(부속기관) ①대학교에는 대외부총장 직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 : 도서관, 평생교육원, 영유아보육연수원, 대학발전연구원, 어린이집, 대덕군사기술연구소 등 ②각 부속기관에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전임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속기관에는 필요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부속기관 설치 및 폐지에 대하여는 대학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하되,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부속기관) ①대학교에는 대외부총장 직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 : 도서관, 평생교육원, 영유아보육연수원, 대학발전연구원, 어린이집, 대덕군사기술연구소, 역사관 등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 ⑥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26호의 법인 교직원인사 규정 개정(안)입니다.

의장이 제26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26호 안건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안근식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26호의 안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안근식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법인 교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구)현행	(신)개정
제5조(임용의 원칙) 교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채용 또는 그 자격, 연수성적, 시험 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임용의 원칙) 교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채용 또는 그 자격, 연수성적, 시험 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8조(특별채용) ①교직원을 특별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자 로서 성실성이 있는 자 2. 특수한 교과목이나 분야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학원과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공개채용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 5.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②신규채용에 있어서 사무처리 및 학생에 대한 교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전 직급에 관계없이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채용) ①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삭제 5. 생략 ②생략
제21조(임용시기) ①교직원은 임용장, 임명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	제21조(임용시기) ①생략 ②생략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고

<table>
<tr><th>(구)현행</th><th>(신)개정</th></tr>
<tr><td>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까지 임용장, 임명장, 발령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 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td><td>③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 포함)의 경우 교원은 매년 3월 1일자로 하며, 일반직원은 매년 1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td></tr>
<tr><td>제24조(대학 교원의 승진임용) ①대학 교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현 직급에서 다음과 같은 연한 이상을 재직하여야 승진할 수 있다. 단, 신규임용된 계약제 교원의 최초 임용기간(2년)은 승진 소요년수에 포함한다.
<table>
<tr><th>직급별</th><th>소요년수</th><th>비고</th></tr>
<tr><td>조교수 → 부교수</td><td>6</td><td></td></tr>
<tr><td>부교수 → 교 수</td><td>5</td><td></td></tr>
</table>
②승진임용은 현 직급 내에서 연구발표한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인정환산율은 따로 대학의 규정(규칙)에서 정한다.
③교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 재임용(승진) 평가시행 지침”에 의한 평정을 실시하여 명시된 기준 이상인 자를 승진임용 대상자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재임용(승진) 평가시행 지침”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td><td>제24조(대학 교원의 승진임용) ①대학 교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현 직급에서 다음과 같은 연한 이상을 재직하여야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심사 신청은 현 직급에서 3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신규임용된 계약제 교원의 최초 임용기간(2년)은 승진 소요년수에 포함한다.
<table>
<tr><th>직급별</th><th>소요년수</th><th>비고</th></tr>
<tr><td>조교수 → 부교수</td><td>6</td><td></td></tr>
<tr><td>부교수 → 교 수</td><td>5</td><td></td></tr>
</table>
②승진임용은 현 직급에 최근 5년 내 연구발표한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인정환산율은 따로 대학의 규정(규칙)에서 정한다.
③교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 재임용(승진) 평가시행 지침”에 의한 평정을 실시하여 명시된 기준 이상인 자를 승진임용 대상자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재임용(승진) 평가시행 지침”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td></tr>
<tr><td>제25조(일반직원 승진소요 최저년 수) ①일반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당해 계급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 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기관(4급) ----------5년 이상
2. 사무관(5급) ----------4년 이상
3. 주사(6급), 기능장(6급) ----4년 이상
4. 주사보(7급), 기능원(7급) --3년 이상
5. 서기(8급), 기능원(8급) ----3년 이상
6. 서기보(9급), 기능원(9급) --2년 이상
②제1항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td><td>제25조(일반직원 승진소요 최저년 수) ①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②생략
③일반직원은 승진심사 신청을 현 직급에서 3회까지 할 수 있다.</td></tr>
<tr><td>제2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 직 ---------- 18월
감 봉 ---------- 12월
견 책 ---------- 6월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받은 자
4. 불순한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자
5. 상위직급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받은 자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③교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이</td><td>제2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 직 ---------- 18월
감 봉 ---------- 12월
견 책 ---------- 6월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받은 자
4. 불순한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자
5. 상위직급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받은 자
6. 현 직급의 승진심사에서 3회 이상 승진이 누락된 자
②생략
③생략</td></tr>
</table>

이사	심재명	이사	한은식	이사	곽영교

(구)현행	(신)개정
사장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승진 임용)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본 법인 및 학교의 발전에 공헌한 실적이 현저한 자 2.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실적이 현저한 자 3.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포상 수상으로 본 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명예를 선양한 자 5.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형편상 부득이할 경우 6. 법인 및 학교발전을 위하여 승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7.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명예 퇴직할 경우	제27조(특별승진 임용)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의 경우에는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가 도래되어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27호의 법인 교직원복무 규정 개정(안)입니다.

의장이 제27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27호 안건은 임정섭 이사의 동의, 신현동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27호의 안은 임정섭 이사의 동의, 신현동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법인사무국 위임전결 개정(안)

(구)현행	(신)개정
제36조(영리업무의 금지) ①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이 저하되거나 학교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이득을 취하거나 학원 및 학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교직원 스스로의 영리추구 목적이 아닌 학교발전에 기여할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교직원이 상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을 겸하는 행위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행위 ②교직원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할 목적이 타당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허가는 교직원이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는	제36조(영리업무의 금지) ①생략 ②교직원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할 목적이 타당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허가는 교직원이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

이사	심재명	이사	안준식	이사	곽영고

(구)현행	(신)개정
경우에 한하여, 그 세부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우에 한하여, 그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겸직허가) ①교직원이 제3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타교 출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원 내 출강은 당해 학교의 장 합의하에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제37조(겸직허가) ①교직원이 제3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생략 ③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타교 출강을 할 수 없다. 다만, 학교발전에 기여할 목적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28호의 안은 법인 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개정(안)입니다.
의장이 제28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28호 안건은 박성옥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28호의 안은 박성옥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법인 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개정(안)

(구)현행	(신)개정
(규정명칭)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규정명칭)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창성학원(이하 우리학원이라 한다) 정관 제47조의2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으로써 명예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창성학원(이하 우리학원이라 한다) 정관 제47조의2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으로써 명예퇴직 또는 조기희망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우리학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중등교원의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과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공무원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우리학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희망퇴직수당의 지급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중등교원의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과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공무원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4조(지급액) ①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상으로 폐질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액) ①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상으로 폐질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심사, 결정) ①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교직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결정) ① 생략 ② 생략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교

(구)현행	(신)개정
1. 공상으로 폐질 상태에 있는 교직원 2. 상위직 교직원 3. 장기근속 교직원 ③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인에 설치된 각 인사위원회가 그 심사를 담당한다.	③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각 학교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심사하여 법인에 제청한다.
(신설)	제 3 장 조기희망퇴직수당 제9조(지급대상) ①조기희망퇴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우리 학원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교원이나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조기희망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조기희망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3. 정부의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 제10조(지급액) ①조기희망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상으로 폐질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기희망퇴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공고) 이사장은 연1회 이상 조기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신청개시일 20일 전까지 전 교직원에게 공문, 게시 등을 통하여 알려야한다. 제12조(지급신청) ①조기희망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조기희망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에 조기희망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 학교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신청서를 받은 학교의장은 7일 이내에 학교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조기희망퇴직일은 교원의 경우 학기말로 하며, 일반직원의 경우 6월말 또는 12월말로 한다. 단, 대학교의 경우 총장의 제청이 있을 경우 조기희망퇴직일에 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결정) ①이사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조기희망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교직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상으로 폐질 상태에 있는 교직원

이사	심2017.2.28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고

(구)현행	(신)개정
	2. 상위직 교직원 3. 장기근속 교직원 ③제1항의 조기희망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인에 설치된 각 인사위원회가 그 심사를 담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의장에게 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지급대상자 통지 및 지급) ①이사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각 학교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학교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학교의장은 당해 교직원이 퇴직하는 날에 조기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 3 장 보 칙 제9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희망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29호의 안은 법인 교원상급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규정 개정(안)입니다.

의장이 제29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29호 안건은 임정섭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29호의 안은 임정섭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법인 교원상급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규정 개정(안)

(구)현행	(신)개정
제3조(연수대상자의 선발) ①본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원의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추천한다. 1. 자격연수 중 2급 정교사과정, 1급 정교사과정 및 교감과정, 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교육법 별표 1,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장기근속 가능성이 있는 교원을 선발한다. 2. 교감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교무행정능력 및 교원통솔력이 탁월하여 교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을 교감으로 임용할 자만을 추천한다. · 본 학원에서 15년 이상 근속자(4년제 대학 졸업기준)	제3조(연수대상자의 선발) ①생략 1. 자격연수 중 2급 정교사과정, 1급 정교사과정 및 교감과정, 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장기근속 가능성이 있는 교원을 선발한다. 2. 교감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교무행정능력 및 교원통솔력이 탁월하여 교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을 교감으로 임용할 자만을 추천한다. · 본 학원에서 15년 이상 근속자(4년제 대학 졸업기준)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교

(구)현행	(신)개정
· 본 학원 주임교사 경력 5년 이상자 ·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자 3. 교장은 교감으로 재임 중 교무행정능력 및 교원 통솔에 발군의 성적을 거두어야 하며 장차 학교운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기준에 해당하는 교감을 교장으로 임용할 자만을 추천한다. · 본 학원에서 20년 이상 근속자(4년제 대학 졸업기준) · 교감자격 취득 후 본 학원에서 3년 이상 교감경력이 있는 자 ②교장과 교감의 자격연수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본 학원 부장교사 경력 3년 이상자 ·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자 3. 생략 ②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30호의 안은 법인 산하학교 교직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안) 입니다.

의장이 제30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30호 안건은 곽영교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30호의 안은 곽영교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승인된 법인 산하학교 교직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안)

성명	소속	위촉사항	임기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덕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연임) · 대전중앙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연임)	2020.10.01.~ 2023.09.30.
김영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연임) · 대전중앙중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연임) · 법인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연임)	

7. 기타안건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호의 안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안)입니다.

이사간 논의하여 간서명 대표로 곽영교, 심재명, 안근식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함.

* 의장이 기타안건 제1호의 안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안)은 **곽영교, 심재명, 안근식** 이사가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언함.

8.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

의장(이사장 심재명): 보고안건 제1호의 안은 중등학교 교원 정년퇴직 보고입니다.

의장이 제1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중등학교 교원 정년퇴직에 대한 내용을 보고함.

★ 중등학교 교원 정년퇴직 보고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교

소속	직명	과목	성명	최초임용일	퇴직예정일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상업	최병삼	1982.04.01.	2020.08.31.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체육	안홍규	1989.04.01.	2020.08.31.
대전중앙중학교	교사	일반사회	조봉제	1989.08.01.	2020.08.31.

의장(이사장 심재명): 보고안건 제2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강사 면직 보고입니다.
의장이 제2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대덕대학교 강사 면직에 대한 내용을 보고함.

2019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회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

소속	직명	성명	퇴직예정일	비고
경찰행정학과	강사	고학곤	2020.08.31.	임기만료
연극영상과	강사	최지운	2020.08.31.	임기만료
세무공무원과	강사	이정미	2020.08.31.	의원면직

의장(이사장 심재명): 보고안건 제3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예산운용 및 급여체계 개편(안) 보고입니다.
의장이 제3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 최동열 기획처장이 대덕대학교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예산운용 및 급여체계 개편(안)을 보고함.

의장(이사장 심재명): 보고안건 제4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소속변경 처리사항 보고입니다.
의장이 제4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 송영필 교육부총장 겸 교무처장이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소속변경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함.

의장(이사장 심재명): 보고안건 제5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산학협력단 링크플러스(LINC+) 사업 감사 계획(안) 보고입니다.
의장이 제5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대덕대학교 대덕대학교 산학협력단 링크플러스(LINC+)사업 감사 계획(안)을 보고함.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6호의 안은 2020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의장이 제5호 안건을 발의 후 법인사무국 업무담당이 2020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함.

★ 2020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예산전용 보고
◇ 법인 일반회계 예산증감 비교표 (단위:천원)

구분	예산과목	기정예산액	전용액	전용후예산액	비고
지출 (관:관리운영비 항:운영비)	교육훈련비	3,000	-2,000	1,000	
	행사비	16,500	-10,000	6,500	
	회의비	32,000	+12,000	44,000	
변동액			0	0	

9. 폐회선언
의장으로부터 오늘의 이사회 마무리 발언에 이어 이사회에 참석하신 임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폐회선언이 있음.
(2020.08.12. 18:00에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함.)

이사	심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고

2020. 08. 12.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심 재 명 (서명)

이 사 곽 영 교 (서명)

이 사 박 성 옥 (서명)

이 사 신 현 동 (서명)

이 사 안 근 식 (서명)

이 사 오 연 주 (서명)

이 사 임 정 섭 (서명)

※가나다 순

이사	심 재명	이사	안근식	이사	곽영교